

# 청소년활동안전공제(단체) 안내 자료

## □ 개요

### ○ 사업목적

-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

#### <사업시행근거>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(공제중앙회의 사업) 제1항제6호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

### ○ 가입대상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-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추천 단체,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

### ○ 피공제자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또는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\*
- \*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
- 1일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

### ○ 보장기간

- 정기가입: 1.1 ~ 12.31.(1년)
- 단기가입: 청소년활동 청약 기간

### ○ 공제료 (\* 청소년, 청소년 지도자 동일)

- 정기가입: 1인당 2,500원
- 단기가입: 청소년·청소년지도자 1일당 200원  
청소년활동참여자 1일당 500원

## ○ 보상범위

- 청소년단체장의 관리·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로 인한 손해
- 청소년단체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

가.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
 나. 일사병  
 다.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
 라.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
 마.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-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
## ○ 보상한도

구분		보상한도
청소년, 청소년 지도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인당 보상한도 : 10억원 한도(요양간병·장해·유족급여, 장의비 등 포함)</li> <li>○ 1사고당 보상한도 : 20억원</li> <li>○ 재물피해 : 1사고당 200만원</li> </ul>
단기 가입	청소년, 청소년 지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인당 보상한도 : 10억원 한도(요양간병·장해·유족급여, 장의비 등 포함)</li> <li>○ 1사고당 보상한도 : 20억원</li> </ul>
	청소년활동 참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망·장해 1억5천만원, 부상 3천만원</li> <li>※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시행령 제13조제2항 준용</li> </ul>
제3자 피해 배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인당 보상한도(인적사고) : 사망·장해 : 1억5천만원, 상해 3천만원</li> <li>○ 1사고당 보상한도(인적/물적 사고) : 20억원/1억원</li> </ul>

## ○ 가입 방법

	정기가입	단기가입
가입대상	연간 정기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 참여자	정기가입이 되어있는 활동에 한하여 정기 계획 중 일부 활동에만 참여하는 청소년 활동 참여자
가입방법	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( <a href="https://ssifins.schoolsafe.or.kr:4443/sws/">https://ssifins.schoolsafe.or.kr:4443/sws/</a> )에 청약 신청	

※ 수영, 스키, 스카이다이빙 등 고위험도 활동은 정기가입을 통해서만 보장 가능

## ○ 사고처리 및 보상 절차



① 사고통지	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<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>에 입력 * 공제중앙회 홈페이지(ssif.or.kr) → [중앙회 공제사업] → 중앙회 업무처리시스템 (사고통지-공제급여) 클릭
② 사고통지 접수	사고통지 접수·보완·반려
③ 공제급여 청구	청구서류 파일을 <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>에 첨부하여 청구
④ 심사 및 지급여부 결정	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※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기일만큼 연장 가능
⑤ 공제급여 지급	·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지급 · 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(공문 발송)
⑤-1 이의신청	공제급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 우편발송
⑤-2 심의결정 및 통보	·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심의 실시 ※ 단,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· 심의일로부터 2주 이내 재결서 통보(등기우편)